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줌줌 · 응모·실무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가이드: 홈택스 단계, ...

루리의 줌줌이 정리한 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가이드: 홈택스 단계, 증빙 모으기, 납부·무신고 대응

루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 확인, 신고 유형 고르기, 증빙 정리, 홈택스 제출, 납부 순서로 진행해요. 이 글은 세율표가 아니라 신고하는 순서와 놓쳤을 때의 대응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 확인, 신고 유형 고르기, 증빙 정리, 홈택스 제출, 납부 순서로 진행해요. 이 글은 세율표가 아니라 신고하는 순서와 놓쳤을 때의 대응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일반 안내예요. 신고 유형과 세액은 개인별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서, 최종 판단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은 별도 글에서 다뤄요.

세율과 대상은 [종합소득세 세율·신고 대상 글]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mprehensive-income-tax-rates-filing/>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mprehensive-income-tax-rates-filing/>))을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실제 신고 과정만 봐요.

1.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
- 지난해 소득이 있었던 모든 곳의 수입 내역(사업·프리랜서·기타소득 등)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증명서류
- 사업자라면 장부 또는 경비 증빙

국세청 안내상 제출 서류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같은 서류가 예시로 나와 있어요.

2. 신고 유형별로 내는 서류

구분	주요 제출 서류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요. 기준 금액은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3. 홈택스 신고 단계

-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 유형(모두채움 안내, 일반 신고 등) 가운데 본인 상황에 맞는 화면을 골라요.
-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자는 장부 또는 경비율 방식을 선택해요.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요.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해요.
- 접수증과 납부서를 보관해요.
- 어떤 소득이 어느 화면에서 처리되는지는 해마다 안내가 바뀔 수 있어요. 올해 화면 구성은 홈택스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어요.

4. 경비·증빙 챙기기

- 경비는 실제로 사업에 쓴 비용이어야 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해요.
-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출 서류인 추계소득금액계산서가 필요해요.
- 영수증수취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 어떤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 「경비율적용 방법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5 5. 납부와 분납

- 납부는 신고서 제출과 별도로 끝내야 해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미납 상태예요.
- 납부 수단(전자납부, 카드 등)은 홈택스 「세금납부 안내」에서 고를 수 있어요.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해요.
-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대상이에요. 납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이니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6 6. 신고를 못 했을 때

- 기한을 넘겨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기한후신고」 제도가 있어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무신고가산세를 일반적으로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로 정하고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납부가 늦어진 날짜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을 수 있어요.
- 기한후신고 때의 감면율과 적용 조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신고 후 틀린 부분을 알았다면 세액이 많게 신고된 경우는 경정청구, 적게 신고된 경우는 수정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요건과 기한은 **공식 확인**이에요.

7 체크리스트

- 홈택스 로그인 수단을 준비했다
- 모든 소득의 지급 내역을 모았다
- 장부 또는 경비율 중 적용 방식을 확인했다
- 유형에 맞는 제출 서류를 갖췄다
- 신고 후 접수증을 저장하고 납부까지 마쳤다
- 분납이 필요한지 세액을 확인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서만 내면 납부가 끝난 건가요?

A. 아니예요. 신고와 납부는 따로 완료해야 해요.

Q. 증빙은 신고할 때 다 올려야 하나요?

A. 제출 대상 서류는 유형마다 달라요. 제출하지 않는 증빙도 보관해야 하는지는 국세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Q. 홈택스가 어려우면요?

A.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Q. 이미 기한이 지났어요.

A. 가산세가 커지기 전에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9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제출서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3&cntntsId=766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3&cntntsId=7665>)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및 관련 메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https://www.hometax.go.kr>)
- 기장의무 기준, 경비 인정 범위, 기한후신고 감면율, 경정청구·수정신고 요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공식 확인)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0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